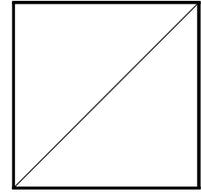


공 개



의안번호	제 150 호	의 결 사 항
의 결 연 월 일	2022. 5. 25. (제 10 차)	

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금융위원회회의 안건

제 출 자	위원장 고 승 범
제출 연월일	2022. 5. 25.

## 1. 의결주문

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## 2. 제안이유

신용협동조합법 개정으로 상호금융업권에 금리인하요구권이 도입됨에 따라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금리인하 요구 관련 요건 및 절차를 정하고, 신협 조합의 설립 인가 중 물적시설 요건을 정비하고자 함

## 3. 주요내용

### 가. 신협조합 설립인가 중 물적 시설의 면적기준 정비(제11조제1항)

물적 시설 요건 중 면적기준을 최소 면적기준인 30제곱미터이상에서, 사무실 등의 공간을 영업규모에 맞게 맞출 수 있도록 변경

### 나. 상호금융 금리인하 요구 관련 요건 및 절차 등을 규정(제18조의3, 24조의3, 별표2)

상호금융 조합에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요건, 금리인하 수용 여부·사유 통지 기간 및 방법, 과태료 부과기준(1,000만원) 등을 규정

##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규제개혁위원회 합의완료

라. 기 타 : 1) 입법예고(2022. 2. 11. ~ 3. 23.) 결과, 특이사항 없음  
2) 제10차 안전검토 소위원회(2022.5.19.) 심의필

###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1항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가. 업무 수행에 필요한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것

제18조의3 및 제18조의4를 각각 제18조의4 및 제18조의5로 하고, 제1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8조의3(금리인하 요구) ① 조합과 대출등의 계약을 체결한 자는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합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.

1. 개인이 대출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: 취업, 승진, 재산 증가 또는 개인 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

2. 개인이 아닌 자(개인사업자를 포함한다)가 대출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: 재무상태 개선,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

② 제1항에 따라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조합은 해당 요구의 수용 여부를 판단할 때 신용상태의 개선이 금리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.

③ 조합은 제1항에 따른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(금리인하 요구자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)에 해당 요구의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금리인하

요구자에게 전화, 서면, 문자메시지, 전자우편, 팩스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리인하 요구의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.

제24조의3제5호 중 “제18조의3”을 “제18조의4”로 한다.

별표 2 제2호라목부터 타목까지를 각각 마목부터 파목까지로 하고,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라. 제45조의3제2항(제79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위반하여 금리인하 요구를 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않은 경우	법 제101조 제1항제1호의3	1,000
---	------------------	-------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8조의3, 제24조의3 및 별표 2 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은 2022년 7월5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1조(인가의 세부요건) 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설립의 인가요건중 인력·물적시설 및 사업계획의 세부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p>1. (생 략)</p> <p>2. 물적시설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em;"><u>가. 바닥면적이 30제곱미터이상의 사무실을 갖출 것</u></p> <p>나. (생 략)</p> <p>3. (생 략)</p> <p>② (생 략)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제11조(인가의 세부요건) ①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em;"><u>가. 업무 수행에 필요한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것</u></p> <p>나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제18조의3(금리인하 요구) ① 조합과 대출등의 계약을 체결한 자는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합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.</u></p> <p>1. <u>개인이 대출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: 취업, 승진, 재산 증가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</u></p> <p>2. <u>개인이 아닌 자(개인사업자를 포함한다)가 대출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: 재무상태 개선, 신</u></p>

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

② 제1항에 따라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조합은 해당 요구의 수용 여부를 판단할 때 신용상태의 개선이 금리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.

③ 조합은 제1항에 따른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(금리인하 요구자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)에 해당 요구의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금리인하 요구자에게 전화, 서면, 문자메시지, 전자우편, 팩스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리인하 요구의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.

제18조의3 · 제18조의4 (생략)

제24조의3(규제의 재검토)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

제18조의4 · 제18조의5 (현행 제18조의3 및 제18조의4와 같음)

제24조의3(규제의 재검토) -----  
-----

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 
3년마다(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  
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)  
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 
조치를 하여야 한다.

1. ~ 4. (생략)
5. 제18조의3에 따른 외부감사의  
대상이 되는 조합의 자산총액  
기준: 2014년 1월 1일
6. (생략)
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1. ~ 4. (현행과 같음)
5. 제18조의4-----  
-----  
-----
6. (현행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	금융위원회	금융감독원
소관부서	중소금융과	상호금융국
연 락 처	02-2100-2983	02-3145-8072